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40
----------	------

발의연월일 : 2016. 11. 24.

발의자 : 이종배 · 전희경 · 윤종필
박명재 · 정유섭 · 함진규
정운천 · 하태경 · 권석창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무예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u></p> <p><u>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u></p> <p><u>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 한 직원을 둔다.</u></p> <p><u>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⑤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무예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